

강위원 성폭력 사건 해결 관련 계획 (초안)

발신 :
수신 :

1. 강위원 성폭력 사건의 해결 원칙

- 피해자 중심주의를 확고히 한다. 피해자 중심주의란 성폭력의 경험을 얘기하는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가해자가 진정한 의미의 반성을 하고 성폭력적인 관점과 언행을 고칠 수 있도록 설득하고 강제한다.
- 운동사회 내 만연해있는 성폭력적인 문화와 풍토를 개선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향에서 사건을 해결해가되, 결코 이 사건을 하나의 계기 정도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 최대한 모든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며, 비대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건해결과정에서 평가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해결과정을 점검하면서 진행한다.

2. 성폭력 사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 여기서 제안하는 <비대위>는 성폭력 사건의 공식적, 전문적인 해결을 주목적으로 한다.
- 구성 : 1차적으로 전여대협과 양심수 후원회로 한다. 피해자가 공개될 수 있으니 비대위 소속단체는 명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진척되는 상황을 봐서 한총련도 포함할 수 있다)
- 대부분의 사건해결과정은 비대위 차원의 논의를 거친 후, 비대위의 이름으로 진행한다.

※ 공대위에 대해 : 사건해결의 진척과정을 봐가면서 공대위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비대위나 공대위가 전여대협과 양심수후원회 외에 다른 단체가 소속되는 것이 상당히 애매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3. 사건해결과정

1) 비대위 정기 모임

2) 피해자 면담

- ①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사건일지를 토대로 한다.
- ② 피해자의 요구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한다.

3) 요구안 마련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기본으로 요구안을 마련한다.

현재로서는 아래와 같은 요구안이 적절할 것이라고 본다.

① 공식적인 공개 사과문

-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해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 무엇을 반성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지침(단지 가해사실이 잘못되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의 언행과 사고에 대한 본질적인 반성) 서술 / 피해자와 피해자가 속한 단체, 그리고 운동사회 전체에 대한 사과 / 앞으로의 구체적인 혁신과제와 실천과제 및 계획 /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 등

- 공개 사과문은 1차적으로는 피해자, 2차적으로는 비대위가 검토한 후 불충분했을 때는 재작성을 요구한다.
- 공개 사과문은 한총련, 전여대협, 양심수후원회, 보이지않는창살, 민주노동당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② 활동 정지

- 가해자는 강연을 비롯해 여러 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해오고 있으며, 학생운동사회를 포함해 운동사회에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에 가해자가 충분한 반성을 하고 총화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활동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활동 정지는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어야 한다.
- 일단은 강연과 사회단체연계활동에 대한 활동 정지를 명하는 것으로 고민된다. *가간*

③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확한 시기와 전문기관을 가해자에게 명확히 공지하여 강제할 것

④ 실천활동

- 가해자 재교육과 함께 실천활동을 통해 자신의 가해사실을 구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 구체적인 실천활동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 구체적으로는 자원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노동, 사회복지기관에서의 자활, 여성단체에서의 자활 등이 있을 수 있다)
- 기간은 2개월로 하는 것이 어떨까? *가간 관련 고민*

⑤ 학습

- 가해자가 제대로 재교육되기 위해서 학습은 필수적이다.
- 학습은 구체적인 커리를 제출해주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게 한다. 운동사회 성폭력 관련 각종 자료집, 색수열리타강의, 아주특별한 용기 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여러 자료를 수집한 후에 다시 정리하도록 한다.

⑥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 피해자가 이것을 요구하는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 접근금지를 요구안에 포함시키게 되면, 피해자가 가해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은 몇군데를 정해 가해자에게 통행을 금지시키고, 전화나 메일 등으로 연락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이 된다.

⑦ 정기적인 확인

- 위의 제반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위해 가해자를 만날 필요가 있다.
- 가해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에 대한 비판과 요구안을 다시 명시하는 공개 대자보를 웹 상에 올린다.

⑧ 가해자에 대한 재면담(총화) ?

- 가해자가 공개사과 이후 일정시간을 두고 위의 제반과정(활동정지, 가해자 재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천활동, 학습 등)을 진행한 후, 가해자를 재면담한다. 이는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한 충분한 반성을 했는지, 그리고 얼마큼 재교육되었는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 가해자 재면담을 하기 전에 먼저 가해자가 그간의 과거오라 통해 어떻게 느끼고, 반성했으며, 재교육했는지에 대해 문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moim 101 @hanmail.net

4) 가해자 면담

① 1차 면담

먼저 가해자를 만나 성폭력 가해사실에 대해 얼마큼 인정하고 있는지, 만약에 반성을 한다면 어떻게 반성하고 있는지를 판단해본다.

비대위는 가해자의 성폭력 가해사실과 피해자의 고통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얘기하며, 향후 어떻게 성폭력 사건을 해결해갈 것인지 적절한 수준에서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최대한 가해자가 설득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사건 해결에 대한 전술을 알려주는 차원은 아니다.)

만약 가해자가 성폭력 가해사실과 해결과정에 대해 전혀 합의하지 못할 때에는,

1차 면담 후 비대위는 피해자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해자의 가해사실 인정 및 반성여부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과 구체적인 해결과정에 대한 계획을 다시 확인한다.

② 2차 면담

가해자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한다.

한꺼번에 제시하기 보다는 우선 기본적인 해결원칙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설득한다.

그리고 가해자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하여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면담을 할 때에는 비대위를 대표하여 전여대협 1인과 대리인 1인이 가해자를 면담한다.

5) 사건해결과정에 대한 공개 대자보 (웹)

① 1차 공개 대자보

-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과 함께 웹상에 올린다.

- 한총련, 전여대협, 양심수후원회, 보이지않는창살, 민주노동당 등의 홈페이지에 올린다.

- 사건경위,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가해자 실명 공개 사과문, 이후 해결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 시기는 가해자가 실명 공개 사과문을 제출하고 나서, 비대위가 정리하여 올리는 것으로 한다.

② 2차 공개 대자보

- 가해자가 요구안의 재반과정을 이행하고 비대위와 가해자가 재면담을 한 후 웹 상에 올린다.

- 2차 대자보가 필요한 이유는, 1차 대자보에서 반성문을 올리는 것을 넘어서, 가해자의 반성과 재교육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성폭력 사건해결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공동의 해결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말하자면, 공개대자보의 역할은 단지 '이런 성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운동사회가 성폭력에 대해 다시금 각인하고 공동으로 극복해가기 위한 것이다.

- 이제까지의 성폭력 사건 해결과정 전반, 가해자의 총화서를 기본으로 한다.

③ 가해자를 강제하는 수단으로서의 공개 대자보

- 만약에 가해자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비대위의 명의로 공개 대자보를 웹 상에 올린다.

- 이 경우에는 사건경위, 사건에 대한 성격규정 및 문제점, 이제까지의 해결과정,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 이후 해결과정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6)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만남

① 피해자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없었는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지, 지금까지 사안들이 어떻게 해결되어 왔는지, 앞으로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요구할 또 다른 요구안은 없는지 등을 점검한다.

② 사건해결과정에서 최대한 모든 사항을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7) 가해자가 비대위의 요구안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① 일단은 면담을 통해 최대한 가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그래도 정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는 공개 대자보를 비대위 명의로 낸다.

③ 한총련을 포함해, 여러 여성단체와 공동의 성명서를 낸다.

8) 또 다른 피해자에 의한 성폭력신고가 접수될 때

똑같은 가해자로 인한 피해자가 성폭력사건을 신고하게될 때에는 위의 과정과 같이 진행한다.

9) 언론의 문제

① 현재와 같이 공개했을 때 언론에 노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② 모든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자료요청 등을 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는 비대위가 언론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성주의 언론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

4. 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활동 계획

1) 운동사회 내 성폭력에 대한 신고 접수 : 공개대자보를 통해

2) 한총련 일꾼들에 대한 교양 사업 : 전여대협이 담당

3) 전여대협, 한총련, + a : 학생운동사회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성명서 채택 (한총련 반성폭력 규약 마련에 대한 요구)

5. 시기별 계획과 흐름

9월 4째주

피해자 면담, 비대위 첫 모임(비대위 계획 및 요구안 마련), 가해자 1차 면담

9월 5째주 (10월 1째주)

가해자 2차 면담 및 요구안 제시, 가해자 공개 사과문 제출, 사과문에 대한 피해자와 비대위의 검토 / (한총련 증상 및 증집에 대한 교양사업)

10월 2째주

사건해결과정에 대한 공개대자보 작성 및 검토, 웹상에 올리기

가해자에 대한 요구안 - 학습, 실천활동 시작

10월 3째주-11월 1째주 (기간 재조정 필요)

가해자가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하는 시기를 정해준다.

(전문기관에 정확한 시간을 알아보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단, 얼마간의 시기와 기간을 정확히 명시하여 이 사이에 이행하도록 한다.)

※ 이후 고민해볼 지점

- 이 사건의 공개가 가져올 악영향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